

光州廣域市西區公共施設物利用에 따른 廣告物標示使用料徵收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年 5月
企劃總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 提案者
- 나. 回附日字 : 1996年 4月 29日
- 다. 上程日字 : 第55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1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5月 7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區政發展擔當官 文 勝 彬)

가. 提案 事由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시설물의 廣告物 표시
·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제2조)

-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제3조)
-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제4조)
 -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자 위탁관리
-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제6조)
 - 사용료는 별표로 기준하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보상금 및 포상금 :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8조)
- 과태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용료 면제시 면한 액의 5배에 처함(제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또는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를 입법 예고한 사항으로
- 시설물의 대상중 버스 승강장등은 계약기간이 종료후에 사용료가 부과되며 지정 벽보판등은 광고대행업소 자체 설치분 정리후가 되므로 광고주 신청에 따라 예상 수입금액이 변동될 것이며
- 시설물의 유형별 광고물 표시 사용료를 월별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 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5. 討論 要旨 : 생략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要旨：없 음

8. 其他事項：없 음

광주광역시서구 조례 호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광고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다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 월별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유형별	사 용 료 부 과 기 준	비 고
버스, 택시승강장, 가로등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0.1㎡당 10,000원 가산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0.1㎡당 7,500원 가산	
관광안내도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0.1㎡당 5,000원 가산	
지정벽보판, 현수막게시대	1㎡이하 30,000원	
	1㎡초과시 0.1㎡당 1,000원 가산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0.1㎡당 12,500원 가산	
지하보도 와이드 칼라	1㎡이하 250,000원	
	1㎡초과시 0.1㎡당 5,000원 가산	
지하보도 컴퓨터 싸인보드	1㎡이하 100,000원	
지하보(차)도 액자	1㎡이하 20,000원	
	1㎡초과시 0.1㎡당 1,000원 가산	
승차권 자동판매기(형광)	1㎡이하 450,000원	
	1㎡초과시 0.1㎡당 20,000원 가산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분류하여 부과할 수 있다.